

☎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(한강로3가 16-49) 삼구빌딩 7, 8층[<http://www.kma.org>]/전화 02)6350-****/전송(02)796-4487
보험정책국 국장 이성민[6574] 의무법제팀장 박일현[6553] 대리 유주현[6541]/ E-mail: h1324yjh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711-06914호

시행일자 2020. 9. 8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유권해석 관련 안내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-5266('20.08.30.)

3.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에 유권해석 추가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.

4. 이에 우리협회는 귀회에 해당 유권해석 추가사항 등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를 요청드립니다.

붙임. (참고)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. 끝.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를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